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636

발의연월일: 2024. 11. 15.

발 의 자: 박정현·김주영·임미애

안호영 · 김한규 · 김현정

이해식 · 강준현 · 문진석

김동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3년 국회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에 대해 종교 단체가 설립한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일부 감면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그러나 의료법인과 종교단체인 재단법인에 대해 감면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와 비교할 때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의 감면율 은 절반에 그치고 있어,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동일한 의료서비 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설립주체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것은 과세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또한 지방의료체계가 붕괴되어 가는 상황에서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세제지원을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종교단체 외에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도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비율을 동일하게 상향함으로써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본문 중 "취득세의 100분의 15(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를"을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로, "재산세의 100분의 25(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35)를"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로, "2024년 12월 31일까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4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 특례) ① ~ ③ (생 략)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 립된 재단법인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 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는 취득세의 100분의 15(감염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 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 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 의 40)을, 과세기준일 현재 의 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 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35)를 2024년 12월 31 100분의 60)을 2027년 12월 31 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다만, 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단서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삭제>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u>경우에는 100분의</u> 40)을, 재산 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 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 감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